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6월 9일

- 회부일자 : 1998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98. 6. 1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황 옥)

가. 제안이유

-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시장·군수)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

나. 주요골자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부동산중개업법 구법에서 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당해 법률의 개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허가 관청(시장·군수)이 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